

# **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**

손관승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## **1. 개정이유**

- 행정 환경 및 의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함.

## **2. 주요내용**

-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별 위원수 조정(안 제2조의2)
  - 5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변경
  -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
  - 복지문화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설치
  -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또는 5명 이내에서 각각 7명 이내로 조정
- 위원회 업무 분담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위원회 소관부서 조정(안 제3조)
  - 업무 분담을 위해 평생학습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조정
  - 업무 연관성을 위해 산업지원본부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

### **3. 검토 및 종합의견**

-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및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에서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함.
- 5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, 상임위원회의 인원수와 소관 업무 조정을 개정하고,  
부칙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조례가 개정되어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, 위원, 간사는 해당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**4. 참고자료**

#### **【 지방자치법 】**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**【 자치법규입안 매뉴얼 】**

제2편 세부입안기준 제3장 부칙 규정에 의거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 조치인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, 적용례, 경과조치, 특례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. (법제처 발간등록번호 11-1170000-00466-01